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요령 설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포함
입시·일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미만인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또는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그 외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입·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월(월력상)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입·이직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파견근로자 파견 및 복귀시 입·이직 기타로 처리
빈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월(월력상)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활동'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과정(신문·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 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

【주의】 •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마지막 영업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는 당월 종사자에 포함하고 다음 달의 이직자로 처리

I 예시1 (입직자 수)

* 조사기준월이 2월인 경우

▶ A회사의 B지점에서

- ① 2월 5일에 2명을 채용 → 신규채용자: 2명
- ② 2월 25일에 1명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 → 기타(복직자): 1명
- ③ A회사의 C지점 2명을 2월 1일자로 발령 받음 → 기타(전입자): 2명
 - ☞ 입직자 수는 5명 = (①신규채용 2명) + (②+③기타 3명)

I 예시2 (이직자 수)

* 조사기준월이 2월인 경우

▶ A회사의 B지점에서

- ① 2월 1일에 2명을 A회사의 C지점으로 발령 → 기타(전출자): 2명
- ② 2월 20일에 5명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 → 비자발(계약종료자): 5명
- ③ 2월 26일에 2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 → 자발(퇴직자): 2명
- ④ 2월 27일에 1명이 정년퇴직한 경우 → 기타(정년퇴직자): 1명
 - ☞ 이직자 수는 10명 = (③자발적 이직 2명)+(②비자발적 이직 5명) + (①+④ 기타 3명)

I 예시3 (빈일자리)

* 조사기준월이 2월인 경우

▶ A회사의 B지점에서 10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 ①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3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 빈 일자리는 10개
- ②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4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 빈 일자리는 0개
- ③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 ☞ 빈 일자리는 0개